

모니터링 리포트

vol. 46

Contents

02 편집자 편지

04 포커스

2021 미디어모니터링 결과 분석 _한지윤 연구원
2021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분석 _고영란 연구원
21년 장애관련 법률 제·개정 성과 _손영수 선임연구원

41 이슈포착

뉴 노말시대의 사회복지의 변화와 대응 _선승연 이사
모두를 위한, 모두의 게임 e스포츠 _박지수 간사
울산남구 장애인시설 실태조사를 하면서 _성현정 대표

51 영화평

나태한 영화의 나쁜 영향력 / 홍은미 감독의 <F20> _류미례 감독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07255
Tel 02)833-3097
Fax 02) 833-3039
홈페이지 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t@hanmail.net
디자인 한빛인쇄

편집자 편지

인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

공간과 장소, 이동 등 지리적 문제를 인권으로 접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동권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니버설디자인(UD)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이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필요공간 부족이라는 원초적인 문제가 유발하는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슈포착3>에서 장애인시설이 갖추어야 할 필수 공간 부족이 이용시설 종사자나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분석한 인권 활동가의 시각은 그래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인권실태조사를 접근하는 방식도 새롭게 보입니다. 종사자에 의한, 또는 이용자 간 학대나 차별실태를 파악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자고 말합니다. 부정적 인권영향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대안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와닿습니다.

‘장애인e스포츠대회 D-War’를 들어보셨습니까? 문화, 여가, 스포츠, 관광 등에서 누구나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장애인에게도 있다고 인식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e스포츠도 마찬가지지요.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장애인에게 특화된 e스포츠가 아니라, ‘장애인도’즐기는 e스포츠 이야기를 <이슈포착2>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긍정적인 의미로 가끔 언급되거나 또 하나의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소위 ‘자폐 기질’, ‘서번트 증후군(Savant syndrome)’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즐기는 게임을 하는 데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추가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이슈포착1>에서는 COVID-19가 가져다 준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적합한 사회복지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확대, 공간의 재구성과 인력확대를 통한 안전 강화, 거버넌스 구축, 기술의 개발과 적용 등은 환경변화에 잠재되어 있거나 실재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에는 올해 장애관련 법률의 제·개정 동향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률 제정,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일곱 개 법률의 개정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제·개정된 장애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미디어모니터링 결과 개요를 담았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를 주제로 하는 보도나 프로그램, 장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내용이나 표현을 모니터링한 결과물입니다. 〈영화평〉에 소개된 홍은미 감독의 영화 'F20'은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내용과 표현을 이유로 방영이 중단된 작품입니다. 부정적 인권영향은 나쁜 의도나 의도치 않은 실수는 물론 '나태함'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도와 무관하게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기여 또는 연관이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절차에 참여할 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권경영이 제도화 되었고, 매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거나 실재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국가조직도 마찬가지겠지요. 정책, 법과 제도,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거버넌스, 조직문화, 공간, 기술, 심지어 나태함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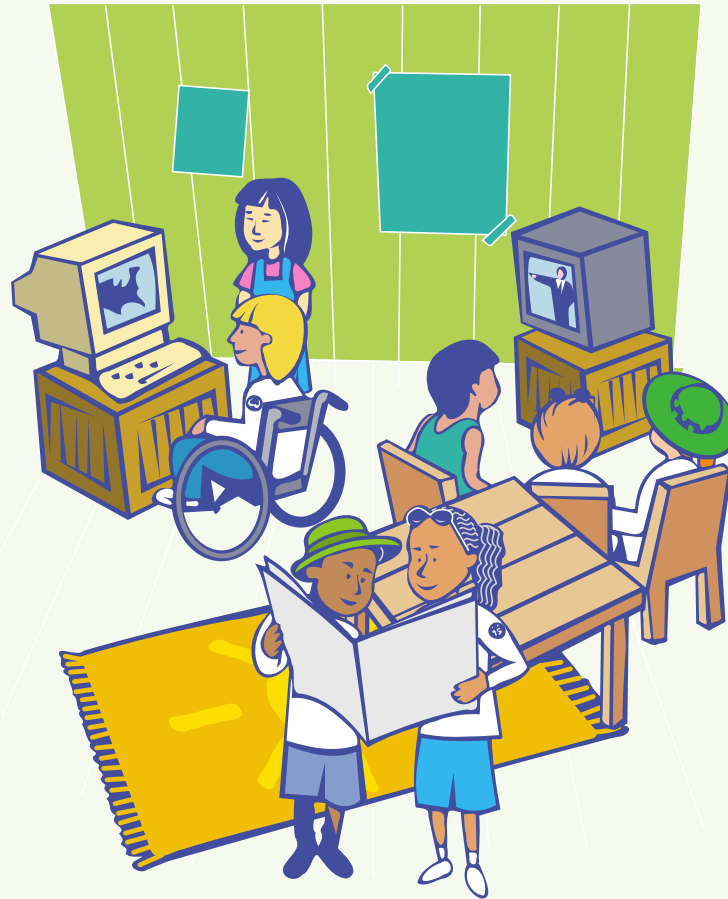
2021년 12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 용 구

포커스

2021 미디어모니터링 결과 분석
- 장애 관련 방영 수 304건, '빙산의 일각'-
한지윤 연구원

2021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민선 7기 지자체별 연평균 장애 관련 조례 제정 건수 14.2건에 머물러
고영란 연구원

21년 장애관련 법률 제·개정 성과
손영수 선임연구원



2021 미디어모니터링 결과 분석

- 장애 관련 방영 수 304건, '빙산의 일각' -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21년 2월에서 11월까지 지상파(KBS, SBS, MBC, EBS) 및 종편방송(JTBC, TV조선, MBN, 채널A)을 대상으로 방송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선정 기준은 방송사별로 17시~24시에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 뉴스, 시사, 드라마, 예능(버라이어티)을 선정했다. 장애인 또는 장애를 주제로 하는 보도나 장애인이 등장, 연기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장애유형,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내용이나 표현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시사, 드라마, 예능은 프로그램 특성상 중영될 수 있기 때문에 중영이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선정해 진행했다. 단, 같은 방송사 또는 분야의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타 방송사,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TV조선의 예능 및 드라마가 중영된 후 이어갈 프로그램이 없어 MBN과 채널A의 예능으로 대체했으며 JTBC는 시사가 종료된 후 JTBC의 예능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10개월 동안 뉴스 8개, 시사 7개, 예능 13개, 드라마 20개의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이를 방영 수로 보면 뉴스 2,338건, 시사 246건, 드라마 421건, 예능 298건으로 총 3,303건이다.

〈장애인에 대한 표현 및 주제〉

(단위 : 개)

	방송사	분류	프로그램명	방영 수	긍정	부정	주제
1	SBS	뉴스	8뉴스	303	9	0	42
2		시사	궁금한 이야기 Y	38	1	0	1
3		예능	집사부일체	40	0	0	0
4		드라마	펜트하우스2	13	0	0	0
5			모범택시	16	0	0	0
6			라켓소년단	16	0	0	0
7			홍천기	14	0	0	0
8			너의 밤이 되어 줄게	4	0	0	0
9	KBS	뉴스	뉴스9	303	10	1	68
10		시사	시사기획 창	37	1	0	1
11		예능	1박2일	42	0	0	0
12		드라마	달이뜨는강	20	0	1	1
13			오월의 청춘	12	0	0	0
14			멀리서 보면 푸른 봄	12	0	0	0
14			경찰수업	16	0	0	0
16			연모	16	0	0	0

17	MBC	뉴스	뉴스데스크	303	7	8	52	
18		시사	실화탐사대	37	0	2	2	
19		예능	놀면 뭐하니	40	0	0	0	
20		드라마		밥이 되어서야	107	1	0	1
21				미치지 않고서야	16	0	0	0
22				두 번째 남편	59	0	0	0
23	EBS	뉴스	저녁뉴스	217	19	0	32	
24	TV 조선	뉴스	뉴스9	303	0	1	10	
25		시사	탐사보도 세븐	38	0	0	0	
26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	3	0	0	0	
27		예능	화요 청백전	8	0	0	0	
28		예능	와카남	20	0	0	0	
29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12	0	0	0
30				결혼작사 이혼작곡2	18	0	0	0
31		JTBC	뉴스	뉴스룸	303	6	4	44
32	시사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8	0	0	0	
33	예능		1호가 될 수 없어	21	0	0	0	
34	예능		해방타운	12	0	0	0	
35	예능		아는형님	42	0	0	0	
36	드라마			시지프스	16	0	1	1
37				로스쿨	14	0	0	0
38				월간 집	16	0	0	0
39				인간실격	16	0	0	0
40				너를 닮은 사람	8	0	0	0
41	MBN		뉴스	종합뉴스	303	7	2	22
42		시사	판도라	44	0	0	0	
43		예능		와일드 와일드 퀴즈쇼	9	0	0	0
44				소문난 남과 함께	9	0	1	0
45	채설A	뉴스	뉴스A	303	3	1	27	
46		시사	천일야사	44	0	0	0	
47		예능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41	0	0	0
48				도시어부3	11	0	2	0
합 계				3,303	64	24	304	

이 중 장애인에 대한 표현이나 주제로 방영한 수는 총 304건이다. 장애인에 대한 주제로 방영하거나 장애에 대해 언급한 수는 304건으로 뉴스 297건, 시사 4건, 드라마 3건, 예능 3건이다. 긍정적인 내용을 방영한건 64건으로 뉴스 61건, 시사 2건, 드라마 1건이다. 부정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사용한 프로그램은 뉴스 17건, 시사 2건, 드라마 2건, 예능 3건으로 총 24건이다.

(1) 뉴스

뉴스는 각 기사별로 장애 관련 보도 수를 확인한 것으로 메인뉴스에서 약 20개의 보도가 방영된다고 했을 때 10개월동안 장애와 관련된 보도가 297건은 정말 적은 양이다. 월별로 보면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었던 패럴림픽에 대한 보도가 많은 8월이 109건, 9월이 52건,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이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는 20건 이하로 장애인 확대 등 장애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지만 어떤 방송사도 지속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월별 장애 관련 보도 수〉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계
SBS	2	2	6	1	2	1	18	9	0	1	42
KBS	5	1	13	0	0	0	32	17	0	0	68
MBC	3	2	3	4	4	3	19	11	2	1	52
EBS	2	0	3	0	0	10	6	2	7	2	32
TV조선	0	0	1	0	0	0	5	0	0	4	10
JTBC	1	3	3	0	4	5	16	4	2	6	44
MBN	2	1	6	0	0	0	0	5	3	5	22
채널A	5	0	1	0	0	0	13	4	3	1	27
총계	20	9	36	5	10	19	109	52	17	20	297

보도 수는 적지만 다양한 기사를 다루는 만큼 뉴스에서 비교적 많은 부정적인 표현이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뉴스에서는 ‘교통마비’, ‘깜깜이’, ‘광란’ 등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장애를 불필요하게 클로즈업하거나 선정적으로 촬영되기도 한다.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면 긍정적인 내용도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이 방영되고 있었다.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사회적, 제도적 해결을 요구하고 제시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많았다. 가장 많은 내용은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대안을 요구한다. 그 외에도 문제에 대해 사회구조적 또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정보 전달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도 한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속성은 떨어진다. 일회성 보도로는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

(2) 시사

시사 프로그램은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심층 보도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다룬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슈는 많지만 다루지 않는다. 근 1년동안 시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건 단 4건뿐이다. 4건 중 부정적인 내용이 2건, 긍정적인 내용이 2건이다. 부정적인 내용은

MBC '실화탐사대'에서 2건이 방영되었다. 먼저 2월 6일에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시택 식구들로 인해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을 빼앗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 중 PD가 지적장애인을 어린이에 대하듯이 “어머니, 이거 얼마인지 아시겠어요?”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답했으나, PD는 또 다시 ‘얼마예요, 그게’ 라고 질문하였다. 이 부분에서 지적장애인을 어린이를 대하는 듯이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MC가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험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라는 멘트에서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치 지적장애인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 두 번째는 7월 17일이다. ‘옷가게 장사장의 비밀’ 라는 제목으로 지적장애인이 옷가게에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학대당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방송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등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고착화에 영향을 주는 듯했다.

긍정적인 내용은 KBS의 ‘시사기획 창’ 4월 25일 방영 건으로 방배동 모자사건 그 후에 대해서 방영했다. 방배동 모자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복지혜택은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는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4월 9일 방영된 내용 중에 정신장애인인 두 아이의 엄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제작진은 장애인의 행동을 관찰하며 문제 행동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구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3) 드라마

드라마에서는 20개의 작품 중 3개의 작품이 장애인을 조연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JTBC ‘시지프스’에서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아냈다. 하지만 무기력함, 슬픔 등의 정조로 묘사되었다. KBS의 ‘달이 뜨는 강’에서도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시각장애인의 눈을 클로즈업하여 장애를 부각되게 표현하여 영상 촬영의 의도가 선정적으로 다가왔다. 반면 MBC의 ‘밥이 되어라’에서는 지체장애를 가진 남성이 조연으로 등장한다. 다른 두 드라마와는 달리 장애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랑, 결혼, 가족으로 인해 갈등하고 관심과 배려로 갈등이 해결된다. 이렇게 갈등이나 인물 관계 속에서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4) 예능

이전에 예능에서는 장애를 웃음의 소재,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표현도 있다. ‘소문난 님과 함께’의 1회에서 게스트가 자신의 아내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 속에서

‘치매어르신을 계속 돌보다간 정신병자가 되요’라고 언급하면서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도시어부3’에서는 출연자가 고기를 잡는 과정이나 잡고 나서 하는 행동에 대해 부적절한 자막을 사용했다. 고기를 낚는 중에는 ‘눈먼 고기의 정체는?’, ‘집념의 미치광이 과학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잡고 난 후 행동에 대해 ‘광기 폭발’이라는 자막을 올렸다. 또 출연자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 때 ‘정신병자인가봐 나도’라는 발언을 했다.

2021년 방송모니터링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아직은 적지만 긍정적인 내용이 방영되고 있다는 것과 줄어들지는 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부정적 표현,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현저하게 낮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었다. 장애와 관련된 인권문제, 낮은 인식, 개선이 더딘 사회적 환경 등 이슈는 다양하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도되는 건 극히 일부이다. 장애인의 날이나 패럴림픽처럼 일시적인 행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영되어야 한다. 방송에서 보도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제외되기 쉽고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나 환경이 바뀔 수 없다. 뉴스는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야하고 시사는 뉴스에서 다 보도하지 못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만큼 장애에 대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뤄야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슈를 다루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드라마나 예능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방영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변한다. 부정적인 내용, 표현, 행동을 방영하면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면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를 언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 내용이 방영되면 사회도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지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방송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장애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방영된 이슈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2021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민선 7기 지자체별 연평균 장애 관련 조례 제정 건수 14.2건에 머물러

고영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례에 대한 제정권은 지방자치권을 상징하며, 또한 법규성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해당 지역 내의 사회복지에 관련한 사항을 광역의회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한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장애인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치법규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 내(전년 7월 1일 ~ 올해 6월 30일) 17곳 전국 본청 및 246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이중 장애 관련 자치법규를 수집, 분류, 분석하였다.

2018년 6월 13일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주민의 삶과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 7기가 출범했다. 올해가 민선 7기의 마지막 4년 차 되는 해이다. 내년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8기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센터는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민선 7기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1. 전국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

장애 관련 조례 반영비율 4%도 안 되는 3.37%

먼저, 전국 246곳의 광역시·도 본청과 기초단체 내 자치법규를 수집한 결과, <표-1>과 같이 나타났다.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장애 관련 조례 데이터에 민선 7기 2차연도~3차연도에 해당하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정된 자치법규를 업데이트하여 모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제정 조례 수 107,836건 중 장애 관련 자치법규는 총 3,632건이 제정되었다. 이는 전체 제정비율 약 3.37%에 해당한다.

지역별 제정 건수와 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818건으로 가장 많은 장애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였으며, 서울 431건, 전남 310건, 경남 234건, 경북 2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4건이다. 하지만

자치법규 제정 수 대비 제정비율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다. 세종이 가진 지리적인 특성과 도시의 분류(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 등), 총 장애인 인구수, 재정여건(단체장과 공무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전, 경기, 제주가 각 5.0%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뒤이어 광주 4.9%, 서울 4.23%, 대구 3.9%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강원과 경북이 각 2.3%로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1〉 전국(본청, 기초단체) 장애 관련 조례 현황

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건, %)

지역	총 조례수	장애 관련 조례수	반영률
서울특별시	10,231	431	4.2%
부산광역시	5,929	167	2.8%
대구광역시	3,477	136	3.9%
인천광역시	4,235	141	3.3%
광주광역시	3,010	146	4.9%
대전광역시	2,309	115	5.0%
울산광역시	2,406	83	3.4%
세종특별자치시	451	24	5.3%
경기도	16,475	818	5.0%
강원도	8,420	190	2.3%
충청북도	5,735	153	2.7%
충청남도	7,889	207	2.6%
전라북도	6,953	196	2.8%
전라남도	10,777	310	2.9%
경상북도	9,893	230	2.3%
경상남도	8,629	234	2.7%
제주특별자치도	1,017	51	5.0%
합 계	107,836	3,623	3.37%

2. (2019년~2021년) 전국 본청, 기초단체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민선 7기 지자체별 연평균 장애 관련 조례 제정 건수 14.2건에 머물러

〈표-2〉〈그림-1〉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 관련 조례는 총 726건 (2019년 306건, 2020년 264건, 2021년 상반기 156건)이 제정되었다. 연평균 제정 건수 242건이다. 지역별 제정 건수는 경기도가 140건으로 가장 많은 장애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 84건, 부산이 4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평균 장애 관련 조례 제정 건수도 경기도가 46.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28.0건, 전남 19.3건 순으로 높은 평균 건수를 보여준다. 반면에 조례 제정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이다. 2019년부터 3년간 4건의 조례만 제정되었다. 세종의

장애 관련 조례 제정은 2012년 출범 후 2013년에 13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에는 1건, 2016년에는 3건, 2017년에는 1건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민선 7기 3년간 전국 지자체 연평균 제정 건수는 14.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7곳이 평균(14.2건) 이상의 제정 건수를 보였다. 반대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경북, 제주 10곳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2〉 전국(본청, 기초단체) 장애 관련 조례 현황

2019~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건, %)

지자체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2019-2021)	연평균 제정건수
	제정 조례수	장애인 조례	제정률	제정 조례수	장애인 조례	제정률	제정 조례수	장애인 조례	제정률		
서울	271	32	11.8%	356	30	8.4%	612	22	3.6%	84	28.0건
부산	361	26	7.2%	275	12	4.4%	240	8	3.3%	46	15.3건
대구	234	26	11.1%	252	12	4.8%	110	2	1.8%	40	13.3건
인천	253	11	4.3%	331	14	4.2%	152	5	3.3%	30	10.0건
광주	210	15	7.1%	232	7	3.0%	117	4	3.4%	26	8.7건
대전	179	13	7.3%	188	8	4.3%	83	7	8.4%	28	9.3건
울산	149	8	5.4%	211	3	1.4%	32	4	12.5%	15	5.0건
세종	50	3	6.0%	32	1	3.1%	15	0	0.0%	4	1.3건
경기	269	50	18.6%	351	57	16.2%	542	33	6.1%	140	46.7건
강원	240	18	7.5%	351	18	5.1%	261	8	3.1%	44	14.7건
충북	229	12	5.2%	274	12	4.4%	190	6	3.2%	30	10.0건
충남	281	15	5.3%	283	15	5.3%	295	15	5.1%	45	15.0건
전북	241	9	3.7%	302	13	4.3%	206	11	5.3%	33	11.0건
전남	212	25	11.8%	307	24	7.8%	288	9	3.1%	58	19.3건
경북	233	14	6.0%	246	9	3.7%	218	7	3.2%	30	10.0건
경남	315	23	7.3%	396	22	5.6%	234	6	2.6%	51	17.0건
제주	57	6	10.5%	67	7	10.4%	33	9	27.3%	22	7.3건
합계	3,784	306	8.1%	4,454	264	5.9%	3,628	156	4.3%	726	14.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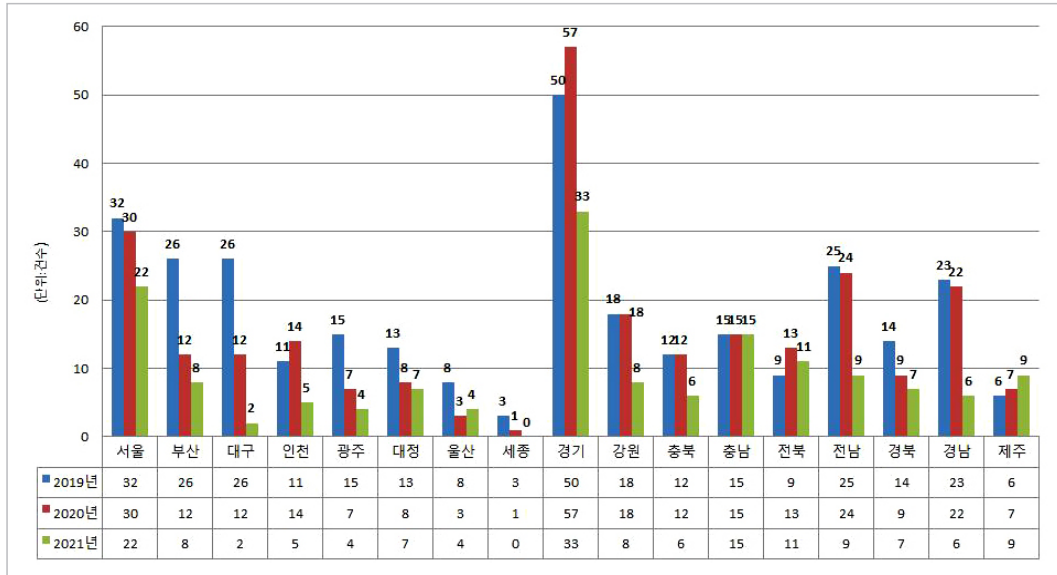
3. 분야별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

장애 관련 자치법규를 장애 관련 키워드를 통해 9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이동·편의' 분야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분야 127건, '의료·재활' 분야 103건, '장애인시설' 분야가 84건, '인권'이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제정된 분야는 '자립 생활' 분야로 43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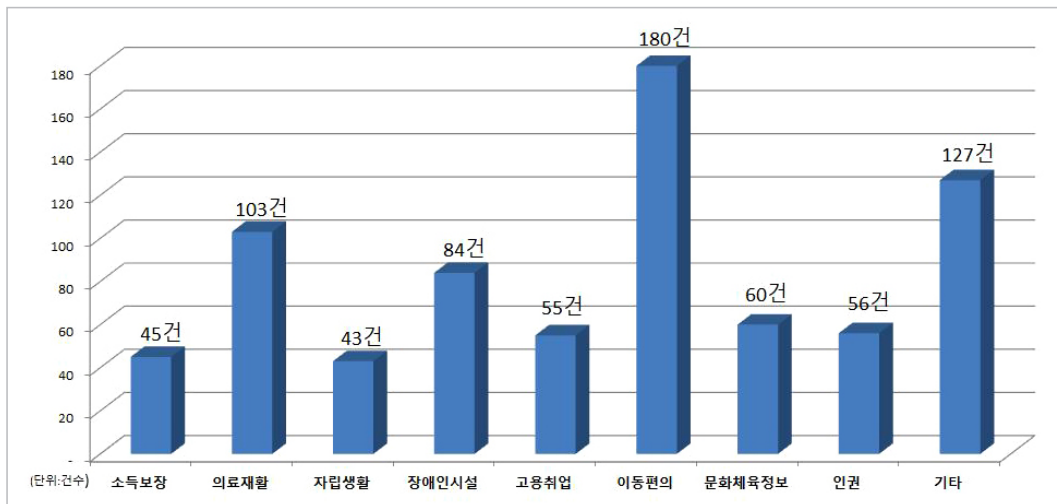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관련한 자치법규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동권과 접근성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필수요소인 만큼 해당 이동·편의 자치법규는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하여 많이 제정 건수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뒤를 이어 '기타',

‘의료재활’, ‘장애인시설’ 자치법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시설과 단체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치법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그림-1〉 전국(본청, 기초단체)장애 관련 조례수 비교
(2019년~2021년 6월 30일 기준)



〈그림-2〉 전국 지자체 분야별 장애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 (2019년~2021년)



2019년~2020년 상반기 기간 통계와 비교해 보면, ‘문화·체육·정보’ 분야와 ‘자립 생활’ 비중이 감소하고, ‘기타’ 분야 비중이 대폭 늘었다. 이는 모니터링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분야별 분류표에 들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을 모두 ‘기타’ 분야에 모두 포함 시킨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분야별 분류표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소득보장’, ‘고용 취업’, ‘인권’ 분야 비중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낮은 비중을 보인다. 여전히 장애인의 인권, 자립,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은 아쉬운 결과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을 민선 7기 3년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민선 7기 3년간은 장애인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그 수요를 반영하듯이 민선 6기에 비해 전국 지자체의 장애 관련 조례 제정은 양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연평균 제정 건수는 14.2건에 머물렀다. 장애 관련 조례 제정 건수 평균에 못 미치는 광역시. 도 또한 10곳이 넘는다. 24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인구 대비에 따라 의원 수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도 각기 다르며, 인구수와 행정구역의 넓이 등이 다르기에 해당 지역에서 제정되는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별 장애 관련 조례 제정 건수 및 비율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246개 지자체의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의 비교분석 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와 의회가 자신의 틀 안에만 안주하지 않고, 내년 출범을 앞둔 민선 8기는 실질적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정책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애 관련 자치법규 입법의 제정과 개정에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21년 장애관련 법률 제·개정 성과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장애관련 법률 제·개정 성과는 장애인 정책 발언과 더불어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배제하더라도 21년 장애관련 제·개정 법안들은 근래의 장애관련 이슈와 현안들의 결과물이기에 국회의정모니터링 사업측면에서 되짚어봐야 할 마땅한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올 한해 어떠한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또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4분기 이슈리포트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률 제·개정’은 국회에서 진행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가의 정책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모든 국민이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 또한 모든 국민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만드는 ‘대의 민주 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회를 ‘국회’라고 부른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국가 정책의 바탕이 되는 법률을 만드는 입법 기관으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이러한 법률 제·개정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고, 국회 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상임 위원회에 넘겨 전문적인 심사를 받게 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를 거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제·개정 절차〉



1. 장애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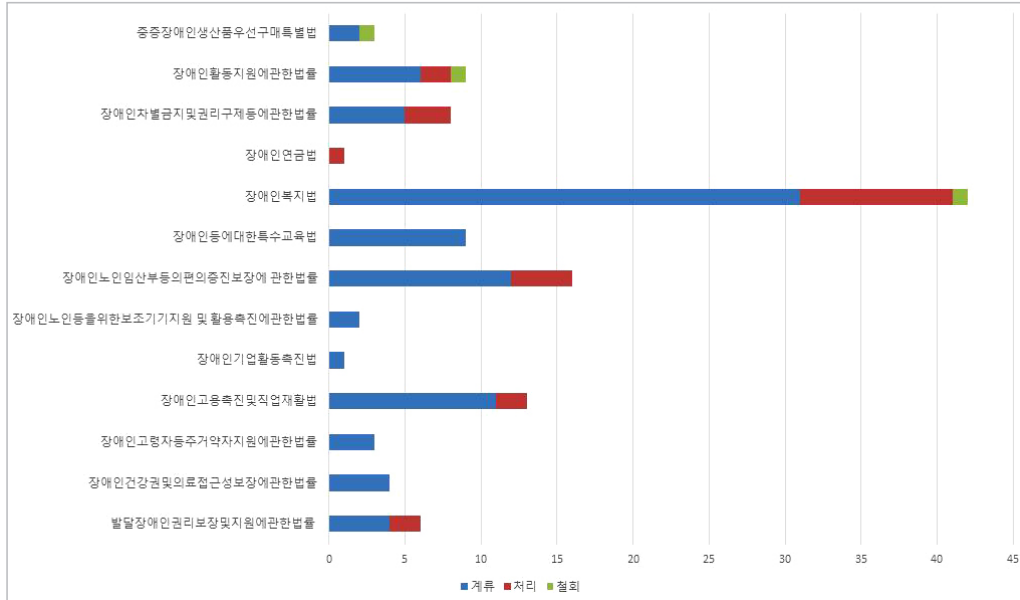
21년 국회의정모니터링 기간(20.10.01~21.09.30)동안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관련 법률 제·개정 성과를 살펴보면, 의원 전체 법안 발의 수는 121건으로 계류 법안 93건, 처리 25건, 철회 3건으로 나타났다.² 또한 기존 장애관련 법률 중 13개에서 (일부)개정이 있었고, 법률 제정은 4개로 파악되었다.

구분	의안명	발의 수	결과		
			계류	처리	철회
개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6	4	2	-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4	4	-	-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3	3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3	11	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1	1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2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16	12	4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9	9	-	-
	장애인복지법	42	31	10	1
	장애인연금법	1	-	1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8	5	3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9	6	2	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3	2	-	1
	제정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급식안전 지원법률안	1	-	1
장애인권리보장법안		1	1	-	-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 법률안		1	1	-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1	1	-	-
합계		121	93	25	3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제외)

1) <http://likms.assembly.go.kr/bill>
 2) 21년 11월 15일 기준

2. 일부 개정 법률 현황



〈일부개정 법률 현황〉

개정 법률안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일부 개정 발의 법안 117건³⁾ 중 장애인복지법이 42건(36%)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장애인편의증진법 16건(14%), 장애인고용촉진법 13건(11%) 순으로 많은 수를 보였고 장애인기업촉진법과 장애인연금법은 각각 1건의 법안 발의 수로 가장 적은 발의 수를 보였다. 법안 발의에 따른 처리율은 23.1%로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23.6%)⁴⁾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 수에 따른 현황〉

연번	의안명	발의수	처리 ⁵⁾	처리율
1	장애인복지법	42	11	26.2%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16	4	25.0%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3	2	15.4%
4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9	-	-
5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9	3	33.3%
6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8	3	37.5%
7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6	2	33.3%

3) 의원 발의 기준

4) 국회의안정보시스템(21.12.07 기준), 의원 접수 12,420건, 처리 2,932건

8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4	-	-
9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3	-	-
1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3	1	33.3%
11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호조기지지원 및 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	-
1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1	-	-
13	장애인연금법	1	1	100.0%
합계		117	27	23.1%

2-1. 일부 개정 가결 법률안

앞에서 다룬 발의 법안 117건은 계류 중인 법안을 포함한 수로 발의 법안 전체 내용을 다루기에는 내용상 한계가 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처리율(23.1%)과 심의절차에 따른 법안 폐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류 법안은 제외하고 가결 법안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기존 장애관련 법률에 반영되었거나, 내년에 시행예정인 가결(대안반영폐기⁶ 포함)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연금법 이상 7개이고, 총 가결 개정 법률은 24건이다. 이 중 장애인복지법이 10건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였으며, 장애인등편의법 4건, 장애인차별금지법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결 법률안 현황〉

법률명	연번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장애인복지법	1	2104513	남인순	20.10.14	21.06.29	대안반영폐기
	2	2105825	이종성	20.11.27	21.05.21	수정가결/공포
	3	2106526	최혜영	20.12.16	21.12.02	대안반영폐기
	4	2107018	최혜영	20.12.29	21.06.29	대안반영폐기
	5	2107019	최혜영	20.12.29	21.06.29	대안반영폐기
	6	2107649	강선우	21.01.26	21.06.29	대안반영폐기
	7	2107856	김민석	21.02.02	21.06.29	대안반영폐기
	8	2108646	김성주	21.03.09	21.06.29	대안반영폐기
	9	2108788	이종성	21.03.15	21.06.29	대안반영폐기
	10	2108975	김민석	21.03.22	21.07.24	수정가결/공포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1	2105062	남인순	20.11.06	21.05.21	대안반영폐기
	2	2105392	서정숙	20.11.17	21.06.29	수정가결/공포
	3	2105416	고영인	20.11.17	21.05.21	대안반영폐기
	4	2105614	이종성	20.11.20	21.05.21	대안반영폐기

5) 처리의안 : 가결 + 대안반영 + 부결 + 기타(폐기+철회 등),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고
 6)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약칭) 장애인고용법	1	2106686	이종성	20.12.17	21.06.29	대안반영폐기
	2	2107608	이수진	21.01.25	21.06.29	대안반영폐기
(약칭) 장애인활동법	1	2104704	김성주	20.10.27	20.12.02	대안반영폐기
	2	2106959	고영인	20.12.28	21.05.21	원안가결/공포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1	2104506	이재정	20.10.14	21.06.29	대안반영폐기
	2	2109588	김예지	21.04.20	21.06.29	대안반영폐기
	3	2109589	맹성규	21.04.20	21.06.29	대안반영폐기
(약칭) 발달장애인법	1	2106960	고영인	20.12.28	21.05.21	대안반영폐기
	2	2107584	강기윤	21.01.22	21.05.21	대안반영폐기
장애인연금법	1	2106956	고영인	20.12.28	21.05.21	원안가결/공포

2-1-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으로 처음 제정되었고 1989년 12월에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제명이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이 되었다. 이후 장애인 권리 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내년 시행 예정인 2건을 포함하여 총 66번의 일부·전면 개정이 지금까지 이뤄졌다.⁷⁾

이처럼 타 장애관련 법률에 비해 많은 개정 법안이 나온 이유는 시행 초기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였다가 전면개정(2007)을 기점으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재활에서 자립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통합과 같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철학이 바뀌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4513	20.10.14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p> <p>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p>			

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위해서는 장애인의 심리, 표현능력 및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장애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확대하여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 신설).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5825	20.11.27	21.05.21	수정가결/공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p> <p>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신설).</p>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7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6526	20.12.16	21.12.02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p>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37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7018	20.12.29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 중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의무자를 일부 확대하며,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행을 담보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방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규정되어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조문을 타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2항·제6항). 나.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폭행·협박 혹은 위계·위력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 현장조사,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제90조제3항제3의5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인 제59조의7제6항을 삭제함(안 제86조제3항).</p>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7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7019	20.12.29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p> <p>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음.</p> <p>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재판정 등을 위한 장애심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p> <p>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p> <p>따라서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정밀심사를 위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비용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p> <p>〈주요내용〉</p> <p>가.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장애인에게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p>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등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7649	21.01.26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또한 현행법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근거가, 「아동복지법」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이나 비장애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한 상황임.</p>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59조의13제2항 신설 등).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7856	21.02.02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의 형집행이 종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더 중한 범죄임에도 취업 제한 대상에 빠져있는 것임. 이에 따라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도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p> <p><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9조의3).</p>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8646	21.03.09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법은 경제적 착취행위를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포함하고 있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확인된 경제적 착취 학대사례는 총 630건으로 이 가운데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전체의 약 19%에 달하는 상황임. 하지만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하더라도 가해자가 친족일</p>			

경우에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알려진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임. 「형법」 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권리행사방해·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친족상도례’ 규정은 1953년 형법의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대사회 대가족의 해체와 가족 내부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진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 때문에 범행 동기, 죄질,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공갈, 횡령·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3 신설).

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8788	21.03.15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장애인 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특히 지난 1월 대전 소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지요원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임.</p> <p>이에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p>			

다만, 사회복지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지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90조제3항제3의4호 단서 신설).

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등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8975	21.03.22	21.07.24	수정가결/공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p> <p>그런데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한편,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등에 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p> <p>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및 제59조의17 신설 등).</p>			

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98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일부 개정 1건을 포함하면 25번의 개정이 이뤄졌다.⁸⁾

1)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5062	20.11.06	21.05.21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업무의 관리·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 등을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나. 인증기관 관리·지원,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다.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 신설).

2)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5392	20.11.17	21.06.29	수정가결/공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2천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p> <p>반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p> <p>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p>			

3)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7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5416	20.11.17	21.05.21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2021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함)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증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후단 신설).</p>			

4)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5614	20.11.20	21.05.21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음.</p> <p>그런데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p>			

2-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91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일부 개정 4건을 포함하면 53번의 개정이 이뤄졌다.⁹⁾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6686	20.12.17	21.06.29	대안반영폐기

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음.</p> <p>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민간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지를 독려하고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p>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7608	21.01.25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음.</p> <p>그러나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상황임. 실제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장애인구의 실업률을 전체인구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목표에 합의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p> <p>따라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79조).</p>			

2-1-4.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일부 개정 1건을 포함하면 18번의 개정이 이뤄졌다.¹⁰⁾

1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4704	20.10.27	20.12.02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p> <p>다만,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기존에 장애인활동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음.</p> <p>따라서,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단서).</p>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6959	20.12.28	21.05.21	원안가결/공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p> <p>장애인활동지원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p> <p>〈주요내용〉</p> <p>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p>			

2-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8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내년 이후 시행 예정인 일부 개정 2건을 포함하면 21번의 개정이 이뤄졌다.¹¹⁾

1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4506	20.10.14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최근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p> <p>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함)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p> <p>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및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신설 등).</p>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9588	21.04.20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식당, 공항,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음식 주문이나 표 구매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p> <p>한편, 최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p> <p>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등).</p>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9589	21.04.20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최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p> <p>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p>			

2-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15년 11월부터 시행하였다. 내년 이후 시행 예정인 일부 개정 1건을 포함하면 11번의 개정이 이뤄졌다.¹²⁾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6960	20.12.28	21.05.21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p>			
<p><주요내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사실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p>			

1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7584	21.01.22	21.05.21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p> <p>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이하 “주간활동 서비스 등”이라 함)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주간활동 지원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p> <p>한편,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7조).</p> <p>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p>			

2-1-7. 장애인연금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내년 이후 시행 예정인 일부 개정 1건을 포함하면 15번의 개정이 이뤄졌다.¹³

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6956	20.12.28	21.05.21	원안가결/공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p> <p>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p>			

1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신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급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의 변동, 지급한 비용의 일부 상계·환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미미한 소득·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변동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 및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전국의 다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의 변동이 소득·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2-2. 제정 법률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결과	
				계류	처리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급식안전지원법률안	2107140	최혜영	21.01.04	-	1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2707	장혜영	21.09.27	1	-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 법률안	2106331	최혜영	20.12.10	1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2109596	유기흥	21.04.20	1	-

21년 장애관련 제정 법률안은 전체 4건으로 이 중 1건 만이 처리되었다. 처리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복지시설급식법)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류 중인 3건의 제정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약 40년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자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인 법안으로 올 1월에 발의되었다.

제정 법률안 중 가장 오랜 기간 계류된 법안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작년 12월에 발의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부의 책무성 강화, 새로운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올 4월에 발의 되었다.

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7140	21.01.04	21.06.29	대안반영폐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p> <p>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004개소 중 83.4%에 해당하는 9,177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p> <p>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p> <p>이에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노인·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p> <p>다.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p> <p>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지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p>			

2)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12707	21.09.27	-	소관위심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p> <p>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시혜적·동정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p> <p>「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현행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복지 실현,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이에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p> <p>〈주요내용〉</p> <p>가.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조정,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등에 관한 심사청구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7조).</p> <p>다. 지역장애인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각 법령에 따른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p> <p>라.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p>			

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9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34조 및 제36조).

3)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등 68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6331	20.12.10	-	소관위심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p>〈제안이유〉</p> <p>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음.</p> <p>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p> <p>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p> <p>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조).</p> <p>마.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p>			

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5조 및 제26조).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32조).

아.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4)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의원 등 48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9596	21.04.20	-	소관위심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이유〉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님.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9조).

- 라.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마.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두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사.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8조 및 제29조).

4. 총 평

앞선 21년 장애인관련 법률 제·개정 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법률명	연번	주요 내용 요약
제정 법안	1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급식안전 지원법률안
	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3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 법률안
	4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복지법	1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이 진술 조력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3	어렵거나 왜곡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일부 확대 및 교육 등의 조문 개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방해자 형사처벌
	5	장애정도 정밀심사의 자료요청을 용이하게 하고,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
	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을 명시, 지자체장에게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근거 마련
	7	성범죄자 장애인관련 기관 취업 제한
	8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¹⁴ 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9	신고의무자의 과태로 대상에서 사회복지요원 제외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
장애인등 편의법	1	BF인증 의무 대상 확대(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 및 운영, 인증수수료 감면 및 시설주 세금 감면
	2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3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고용법	1	장애인의무고용률 3.4%에서 4.0%까지 점진적 상향
	2	2024년까지 공공부문 3.8까지, 민간부문 3.5%까지 점진적 상향조정
장애인활동법	1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2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의 다양화

14) 형법 328조,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 금지법	1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접근성 근거 마련
	2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3	무인화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
발달 장애인법	1	복지지원을 위한 신청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예외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
	2	주간활동 서비스 및 제공기관의 근거, 이를 지자체장은 평가 가능
장애인연금법	1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 신청가능, 주기적인 수급 적정성 조사에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 마련

제정 법률안 중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은 시작부터 장애인을 보호와 재활에 중점을 둔 법으로 내년 시행예정인 일부개정까지 포함하여 66번의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측면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이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정된 법이니만큼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지만 기존의 장애인복지 예산, 전달체계 등을 새롭게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법안은 통과되더라도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장애인 탈시설지원 법률안은 인권 보호를 위해 탈시설을 해야한다는 입장과 제도적 완비를 구축한 후 탈시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는 취지로 만들어 졌으나 가족들과 현장 종사자들은 탈시설이 본격화 되면 가장 큰 피해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처럼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로 나와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하나 시설의 단계적 축소의 기간을 고려하는 등의 보완해야 할 점은 있어 보인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립과 사회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해진다. 하지만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1.5%이하로 전체 성인 35.8%¹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 또한 전체 4,295개 중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308개로 전체 대비 7.2%에 불과하다¹⁶⁾. 결과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안을 두고 평생교육 제도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평생학습법의 하위법령에 장애인평생교육의 지원근거를 담아내면 되는데 굳이 장애인만을 위한 개별법 제정은 사회적 낭비라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입장이 혼재해 있는 가운데 제정 전망은 밝은 편이다. 올 7월 소관위 심사(교육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결과와 제정에 필요한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15) 2017년 한국성인 평생학습실태조사, 교육부
 16)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는 법률답게 사법, 안전, 경제, 편의성, 권익옹호 분야에서 일부개정이 있었다. 무엇보다 2015년 개정을 통해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할과 관련하여 올해만 3개나 법률이 개정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기관의 주요 역할인 장애인 학대예방, 피해장애인 옹호와 조력에 있어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충분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기관 내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¹⁸ 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처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원래의 설립취지처럼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BF인증¹⁹(장애인등편의법)과 관련 된 것으로 현재 BF인증기관은 8곳이나 된다. 다수의 인증기관 존재로 기관 간 편차, 일관성 부족, 부실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작년 국감에서 이러한 운영의 부실로 지적받은 바가 있다. 올해 이를 보완하고자 BF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인증운영기관 설치와 관련 된 법률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인증기관 운영의 부실보다 주목해야할 점은 시행사측에서 인증 기준 자체가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점이다.²⁰ 의무화 시행이후 건물의 일부 변경에도 건축물 전체를 설치 기준에 맞게 강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증운영기관의 초점을 맞춘 개정보다 현실적인 기준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도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상향을 위한 개정이 있었고, 장애인활동법과 장애인연금법에서는 각각 신청방법을 간소화하거나 다양화하는 개정이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무인단말기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정이 있었고,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에 불필요할 수도 있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주간활동 서비스기관을 지자체장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관련 법률들은 모든 영역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씩 개선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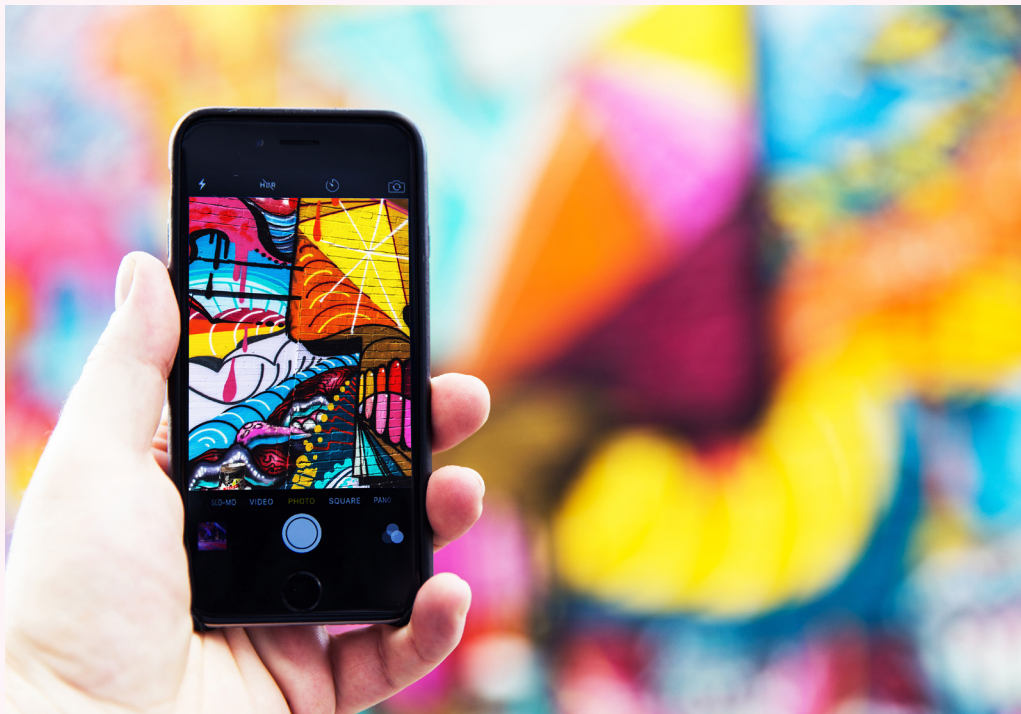
17)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분리교육 조장한다?, 비마이너, 2021.06.01.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0>)
1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낮 뜨거운 행태를 고발합니다!", 소셜포커스, 2020.12.29.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8>)
1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0) 'BF 인증',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 논란... "그렇다고 건물을 부술 수도 없고...",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7>), 건축사 신문, 21.01.18

이슈포착

뉴 노말시대의 사회복지의 변화와 대응
선승연 이사

모두를 위한, 모두의 게임 e스포츠
박지수 간사

울산남구 장애인시설 실태조사를 하면서
성현정 대표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사회복지의 변화와 대응”

선승연 장애인사회연구소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 마치 중세의 흑사병 시대처럼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사람들의 만나는 대인관계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인간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수와 사망자수의 증가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사회복지 또한 예외는 아니다. 현재의 복지체제에 대해 재고를 하고 나아가서는 복지전달체제에 대한 대응방법도 모색해야하는 시점이 되었다. 우리사회는 코로나19가 찾아오기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과학기술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직접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사회복지기관의 대응방안이 시급해졌다.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사회에 닥쳤을 때 사회복지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대응지침에 따라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라도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사회복지기관들은 정부의 대응지침과는 별도로 지역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변화가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노멀시대에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참여와 복지라는 두 가지가 접목이 된 형태를 가르킨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서의 지역사회 복지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참여사회의 복지로 파악할 때 지역사회의 전체성, 참여성(주민참여), 협력성 등을 통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지역 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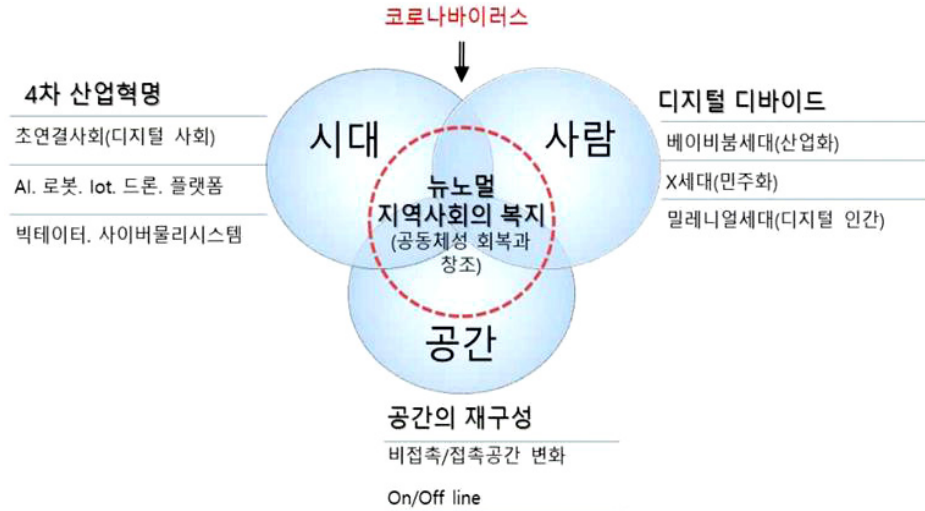
둘째, 사회적 약자를 일선에서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라는 특성상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책임자를 복지관별로 배치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른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내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장비와 물품을 충분히 지급해야 할 것이다. 돌파감염이 성행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기관의 근무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대한 제도적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중단이 되었고, 도시락반찬배달 등의 일은 기존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의 이탈로 인하여 복지관 직원들이 물류업체 직원인 마냥 하루 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업무를 수행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지역사회를 주축으로 민·관 거버넌스체제를 구축,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으로써의 역할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현장의 예로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일용직노동자의 일자리감소로 인한 생계위협, 사회적 약자계층에 속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이르는 삶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층의 삶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 반면 그에 반하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은 코로나19의 체감온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우리는 이런 경제적불평등의 해결을 사회복지현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주변의 이웃에서 말이다. 사회복지실천가, 자원봉사자, 지역사회관계자들의 협업에서 말이다. 즉,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 의료, 복지의 상호협력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1〉 코로나 뉴노멀시대,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향



출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그림-1〉은 시대, 사람, 공간이라는 3가지의 협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겪는 동안 많은 역사적 사건과 함께해왔다. 그때마다 그 시기를 돌파하는 대책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살아왔다. 이번 코로나19도 역사적 시대 사건의 흐름에 맞춰서 공간의 제약이라는 부분과 사람(수혜자&제공자)의 역할을 이어나가야 복지의 사명에 놓여져 있다. 주민자치라는 것에 맞게 지역 내의 주민참여활동을 증강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구축된 사회서비스원의 자원력, 자원봉사센터의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시간의 누적을 통한 추후 본인사용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가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돌봄노동을 위한 사회적 인력수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수평적, 개방적 공동체 등의 지역사회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단독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더불어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진화를 적극 활용한 사회복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드론,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빅데이터(Big Data), 3D 프린팅, 무인운송수단(자율주행차량,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대면적 접촉이 없는 재택근무(원격근무),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인터넷, 스마트폰의 사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 학술계의 논문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는 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비상상황발생 시 스마트 폰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방식을 통한 사회복지사와의 비대면 접촉을 통한 안부점검 등이 한 예이다. 무인으로 운영을 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서비스제공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안들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승희. 2019.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열린충남. 통권89호.
구인회. 2020. 코로나19위기,그 이후의 세상은?.복지저널 141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인숙, 남유선, 2016,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호이테북스.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4판).
원석조. 2014.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병렬·이중수. 201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한국 자치 행정학보 제29권.
이재완. 2014.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자원관리와 민관협력. 2014년 복지행정분야 명강의 선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재완. 2020.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 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 2020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임승규 외. 2020.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빛비즈.
장영신. 2020. 코로나19가 사회복지시설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복지저널 141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0. 코로나19와 사회복지. 앞으로의 과제는?. 복지저널 141호.



제1회 2021 '장애인e스포츠대회 D-War 개최 후기'

모두를 위한, 모두의 게임 : (장애인) e스포츠를 찾아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사업담당 간사 박지수

당신은 '장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이라 생각하는가?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인권 의식의 진화는 우리에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1975년 UN 총회 결의문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장애는 '결함'이거나 '결핍'이었다. 장애인의 권리(정치적,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를 모두 인정하자 선언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결함'이 있거나 무언가 '결핍'되어 있어, 국가와 사회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정의되었다. 의학적 관점에 근거한 전문가주의가 지배하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UN 총회에서 1993년 12월 결의된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부터다. '장애'에 대한 정의는 '결함'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이행을 가로 막는 사회 환경'으로 초점이 이동되었고, 관점은 '의료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서 '탈시설에 기반한 장애인 사회통합'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애'와 '장애인'은 여전히 구분되거나 예단에 의해 배제되는 '무엇'이거나 '누군가'이다. 특히 일상에서 누려야 할 문화, 여가, 친교와 관련된 영역에서 사회적 환경은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탈락시킨다. 이런 현실과 현상은 단순히 한사람의 장애인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역을 탐험하고, 자신을 배제하지 않는 점포를 찾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친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출발선'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장애'가 지불해야 하는 '부당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가 인지의 대상이 아니거나 무시되는 문제인 것은 아니다. 분명 지구촌과 그 안의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노력은 말이다.

게이머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2019년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게임 이용 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조사 대상 372명 중 게임을 한다고 답변한 장애인은 166명으로 44.6%의 비율을 보였다.(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게임 이용 비율은 70%에 이른다.) 그리고 게임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게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시설 부족을 이유로 선택했다.

올해 9월 입법조사처는 국민들의 게임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게임이 드물다는 점을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이슈 분석 자료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게임 이용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과 장애별 이용 형태, 게임 접근 시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가지 짚어보자. '게임'이란 무엇인가? 민속놀이의 반열에 오른 스타크래프트?, 세계적으로 가장 큰 e스포츠 시장을 만들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국산 배틀 로얄 장르의 자존심 배틀그라운드? 누구나 쉽게 생각할만한 게임들이

뇌리에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조사나 올해 입법조사처가 언급한 게임이라는 것이 같은 유형의 것인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게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산업계는 아직 '장애인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을 특정해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에게 게임의 가치는 '재미'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게임은 '재미있으면서 재활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되고는 한다. 누구도 쉽게 '스타크래프트'로 대전을 즐기는 장애인, '리그오브레전드'대회에서 승부하는 장애인을 상상하지 못한다.

입법조사처의 지적은 적절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게임'일까? 기존에 모두가 즐겁게 즐기고 있는 게임을 함께 즐기면 안되는 걸까? 장애인들도 PC방에서 친구들과 단체전을 하고, 승급전을 하면 안되는 걸까? '장애인의 접근성을 갖춘 게임'이란 게 뭘까? 그 전에 '장애인의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 다를 문제일까? 이 질문은 한국장애인연맹이 당사자주의 장애인단체로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가져온 질문의 요체였다.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하는'게임과 e스포츠

장애인들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무언가로부터 재미를 느끼고, 즐기는 것에 장애 유무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비장애인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다면,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즐겁게 재미있는 거다. 다만,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뿐이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인권 의식이 성숙해진 시점에도 여전히 '장애'를 구분해 특정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취급하는 관행은 여전히 있다.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인간 본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에 장애인이 다른 점이 있을 까닭은 없다. 우리가 '장애'와 '장애인'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을 뿐이다.

한국장애인연맹에서는 2021년 3월 기획회의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도전을 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조차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도전이 과연 성공할지에 대해 어떤 기대 섞인 전망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먼저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e스포츠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게임문화와 e스포츠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지속 가능한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사전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장애인 게임대회가 복지 관점의 일회성 이벤트이거나 사전에 기획된 '장애인을 위한 체험 행사' 정도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업은 '장애인 게이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e스포츠 생태계'의 생성에 기여하는 사업이어야 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와 고용 등, 관련된 사회적 환경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사업이어야 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 수행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있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파트너도 있어야 했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사회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게임업계의 관심이 절실했다. 우리는 주로 보건복지 영역의 업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IT나 게임과 관련된 네트워크는 너무나 부실했던 것이다.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수집해야 했고, 그러던 중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이하 e스포츠연맹)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장애인단체와 접촉하게 되었다. 우리의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해 준 e스포츠연맹과의 만남으로 기획과 준비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문제는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다. 장애인e스포츠를 향한 우리의 도전도 마찬가지였다. 대회를 위한 기본적인 밑그림은 어떻게든 그릴 수 있었지만, 이제 세부 요강과 종목 선정, 장애 유형에 따른 구분 등 머리를 써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특별하게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장애 유형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체급을 구분하는 스포츠가 있는 현실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다. 또한 COVID-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생중계 등, 고려하고 조정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 났다.

아! 방역도 있었지.

제1회 2021 장애인e스포츠대회 D-WAR

우여곡절 끝에, 대회를 10여일 앞두고 메인으로 후원을 맡아줄 기업이 나서 주었다. 게임 포털을 운영하는 '아이엠아이'는 메인후원사를 맡아주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해 주었다.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 이렇까? 노력이 하나 둘 보상을 받는 것만 같아 담당자로서는 뿌듯하기도 기쁘기도 하였다. 이번 우리의 도전은 많은 이들의 손이 보태진 결과다. 모두가 우리 연맹의 도전을 응원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몸을 먼저 움직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본다. 특히,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준 후원기업들과 협찬사,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와 기관들의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 도움을 주면서 처음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대회 날은 성큼 성큼 다가왔다.

지난달 19일 늦은 시각.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 1층에는 거대한 풀HD LED가 세워졌다. 온라인 생중계를 위한 장비들과 대기하는 선수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만들어졌다. 이제 곧 날이 바뀌고 해가 뜨면 이곳에서는 장애인 게이머들이 한판 대결을 펼칠 것이다. 모든 룰은 비장애인들이 하는 공식 e스포츠 경기와 같고, 장애인이라서 무엇 하나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는 장애인e스포츠대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대회는 총 3종목(스타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 카트라이더)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경기 영상은 한국장애인연맹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니, 한번 짚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는 선수들과 스텝, 엔지니어, 대회 운영진과 주최측 관계자들만이 있었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선수들의 경기 한 장면 한 장면에 환호와 안타까운 탄식이 교차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도전이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충분했다. 선수들의 열정은 뜨거웠고, 그에 대한 반응은 장애인e스포츠가 충분히 하나의 스포츠로서 관객을 끌어 모으고 선수들을 육성해 장애인e스포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모두들 위한 모두의 게임.

한국장애인연맹이 올해 진행한 것은 어쩌면 그저 그런 하나의 게임 이벤트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회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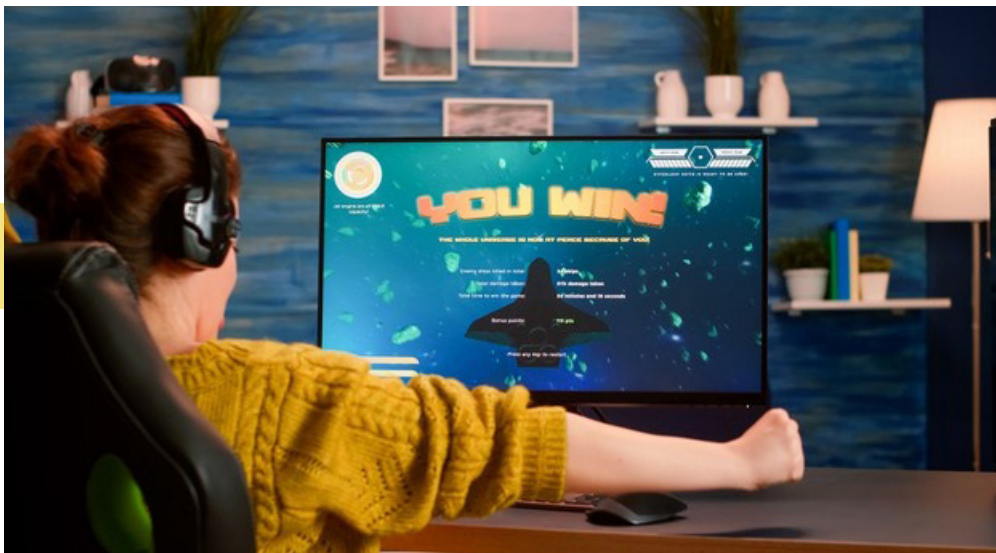
현장에서 지켜본 나의 눈에 이번 대회는 ‘모두들 위한 모두의 게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마냥 뿌듯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느낀 점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관심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다양한 장애인들이 마음껏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와 컨트롤러 등, 보조장비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액세스블 게이밍(Accessible Gaming)’이라는 주제로 게임 내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보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장애 유형이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들이 접근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전용 게임장을 비롯해 게이머를 지향하는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역시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게임학과나 e스포츠 관련 교육기관에서 쌓은 역량을 실제 대회에서 다른 게이머들과 겨루며 더욱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대회 역시 필요해 보였다. 이 모든 일은 물론 내가 일하는 한국장애인연맹 한 단체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 주도로 게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지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한다. 또, 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성 게임을 다양하게 제작·유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과연 다양한 ‘기능성 게임’이 게임 문화 전반을 즐기고, e스포츠등 비장애인과 동일한 문화에 통합되고 싶은 장애인들의 바람일까 의문이다.

‘기능성 게임’보다, 지금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게임과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재미있는 게임들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즐기고,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컨텐츠로 키워나가고 싶다는 것이 ‘게임’을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꿈이 아닐까.



울산남구 장애인시설 실태조사를 하면서

성현정 울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그동안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형제복지원으로부터 도가니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를 비롯한 거주시설에서의 감금,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 보조금 횡령 및 거주 장애인 금품갈취,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의 엄청난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시설 종사자에 의한 것이므로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은 마치 잠재적 인권침해 가해자로 분류되고 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거주시설의 30인 이하의 소규모화, 외부 인권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매월 인권점검 실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의 의무화 등 다양한 예방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시설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화 되더라도 시설은 시설이고 시설이 존재하는 한 그 곳은 장애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0년 학대실태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거주시설 내에서의 학대는 시설의 규모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장애인 집단이용시설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종사자들에 의해 복합적 유형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울산은 장애인학대로 인한 인권침해로 언론과 현장이 시끄러웠다. 한 곳은 정서적학대로, 다른 한 곳은 성적학대로. 두 시설 모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장애인이 안전하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시설 내부인 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 컸으며 그 여파로 10월부터 11월까지 울산 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필자는 울산남구지역 시설 조사팀의 민간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조사지 몇 장으로 기관이나 시설 내에서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보고 알 수 있을까? 이용 장애인들에게 이 문항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각 시설들을 방문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와 대화를 통해 시설이 어떠한 규모이고, 어떻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용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부 개인시설이 있지만 대다수가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시설이며 실제 필요공간보다 좁은 공간에서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용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었다.

필요공간만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복지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거주시설 뿐이었고 대부분의 주·단기 보호시설은 모두 개인 건물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2, 3인의 조사원들이 들어가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이용자나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 시설도 거의 없었다.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온전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이용시설이라고는 하지만 매일 짧게는 4시간부터 6시간 이상까지 같은 공간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시설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교육장이나 프로그램실의 크기가 좁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럽지는 않아야 하며, 피곤하거나 약물복용으로 쉬어야 할 때에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편안한 공간은 없었다. 시설 내에서도 마음이 잘 맞는 2~3명의 이용자들이 간단한 음료수 한 잔씩이라도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간은 종사자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커피 한잔 마시는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화분 하나라도 눈을 맞추며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용자와 잠시나마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종사자도, 이용자도 늘 같은 공간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부대끼며 생활하기 위해서 가끔은 잠시 잠깐이라도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생활상에서의 행동수정을 위한 잘못에 대한 지적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태한 영화의 나쁜 영향력 / 홍은미 감독의 <F20>

류미레 감독

“F20은 조현병의 국제질병분류기호이다. 100명 중 약 1명이 걸리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의학적 관리와 재활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영화 <F20>의 엔딩크레딧에 나오는 자막입니다. 이 자막만을 봤을 때에는 감독이 조현병을 제대로 알리고 조현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자막의 내용과는 반대편에 서있습니다. 늘 함께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번 호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공영방송 KBS가 시도하는 영화 프로젝트 ‘TV시네마’ 첫 작품 <F20>이 장애계의 거센 반발로 방영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KBS 드라마스페셜’이라는 단막극을 내보내던 KBS가 올해에는 특별하게 4편의 TV시네마를 준비했고 첫번째 영화 <F20>이 지난 10월 6일 개봉해서 2만 3천여명이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는 극장개봉 뿐 아니라 KBS2채널을 통해 안방에 방영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편성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F20>은 상영시간 104분의 심리스릴러영화입니다. ‘드라마스페셜’을 통해 여러 편의 단막극을 선보였던 홍은미 감독은 제작발표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 인식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화제목도 가장 중립적인 표현으로 <F20>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영화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영화에는 두 명의 엄마 애란과 경화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아들 도훈이 조현병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은 후 세상이 무너진 것같은 심정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애란을 경화가 위로해주던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경화의 아들 유찬도 조현병입니다. 영화 속에서 경화는 조현병 자녀를 둔 부모가 취해야할 가장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첫 만남에서 애란에게 건넸던 첫 마디가 “조현병은 그냥 병일 뿐이다”라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찬의 병명을 안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통고를 받은 후 거처를 찾다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경화는 애란에게 “이제 이사는 그만 다니고 싶다”는 바람을 내보입니다. 보험판매일을 하는 애란에게 도훈은 자랑스러운 자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상을 휩쓸며 일명 ‘엄친아’로 자라왔던 도훈은 대학도 서울대입니다. 애란 또한 임대아파트 주민이지만 자식이 서울대라는 이유로 임대단지, 분양단지 가리지 않고 모든 주민으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아마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 것같은 도훈을 옆에 두고 애란은 동네사람들에게 뉴욕에 어학연수 다녀왔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애란은 자식의 병명을 숨긴 채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동네주민들과 교류하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화가 애란이 사는 아파트단지로 이사오면서 좋았던 관계는 결국 살인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여러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경화의 이사를 계기로 주민들은 ‘조현병’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냅니다. 조현병은 그냥 병일 뿐이라고, 그래서 유찬이는 조금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경화에게 주민들은 “그 말은 ‘우리 집 개는 안물어요’와 같은 말”이라며 비난합니다. 조현병이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주로 참여하는 강좌에서 전문가는 “조현병은 약물로 조절이 가능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현병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혐오를 보이는 이웃사람들, 그리고 조현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가. 이 두 설정에서 조현병에 대한 사람들의 현재와 인식개선의 방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감독의 의도가 읽힙니다. 하지만 이 두 설정은 영화 안에서 연관없이 따로 놀았고 장애계는 이 영화에 반대의를 표명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은 극중 모델이 되는 배형진 씨와 같이 등산도 다닐 정도로

일상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표가 붙는 집단의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 감독은 신중해야 합니다. <말아톤>의 초원이나 <F20>의 도훈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제작의 목적 중 하나가 그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이라고 했을 때에 감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판을 깔아야합니다. 정윤철 감독의 <말아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그 주장의 올바름 때문만이 아니라 주인공의 특성 너머 존재하는 보편적인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하지만 장애와 상관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20>의 주인공 도훈과 관련한 묘사는 장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훈은 조현병의 공포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일 뿐 그의 인간적 특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극중에서 보여지는 도훈의 증상은 벌레에 대한 환각입니다. 화분 밑에서 기어나오는 벌레를 보여주다가 도훈의 얼굴 장면이 나오고 다시 벌레가 없는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 방식으로 도훈의 환각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도훈의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데 이웃집 학생과 과외를 하다가 손등으로 기어올라오는 벌레를 발견하고 아프도록 긁어대는 모습을 통해 도훈의 일상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영화 속 도훈과 유찬의 모습은 “지속적인 의학적 관리와 재활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과는 판판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길고양이를 살해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의 의도는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떠난 뒤의 아파트단지에서 또 끔찍하게 살해된 길고양이가 등장하고 이웃사람이 “누가 알겠어. 우리 중의 누가 또 미쳤는지. 미쳐가고 있는지”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쩌면 감독은 조현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객에게 각인되는 것은 조현병이 고양이를 살해하는 폭력적인 병이라는 사실 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제작진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 당사자들을 만나서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쯤 만나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갖고 관계를 지속해봤다면 이런 영화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해동안 정신장애인들과 미디어교육을 진행해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전체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작가나 감독이 한 번만이라도 조현병 당사자들을 만나보았다면 이런 영화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확신만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얼굴과 삶을 가진 조현병 당사자들과 깊은 대화를 해봤다면 장애라는 것이 한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을 텐데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은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틱장애처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감독은 제대로된 취재없이 비장애인들의 공포나 생경함이 느껴지는 상황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이 조현병이다’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이웃사람들이 조현병을 혐오하고 불편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알리바이를 제공해줍니다. 결국 영화는 조현병 당사자들은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 사회와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되며 끝이 납니다. 그러니 엔딩크레딧의 저 문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장추련 등 단체들은 <F20>의 지상파 방영 등 모든 매체 즉각 방영 중단, <F20>에 대한 KBS의 공개적인 사과, 장애인 혐오 내용 제작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고 일부 관철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요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감독도 자신이 조현병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는 이런 나쁜 영화를 만들어낼지는 몰랐을테니까요. <매드맥스:분노의 도로>의 조지 밀러감독은 여성학자를 촬영현장에까지 대동할 정도로 의지했다고 합니다. 영화감독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이 갖지 못한 통찰력을 겸비한 누군가를 파트너 삼는 것에서부터 한 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F20>은 현재 웨이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의 태도로 한 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